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국고보조 시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광주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‘2015년~2016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’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, 편성목, 통계목으로 분류하며, 세부분류 내용은 [별표12]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, [별표12]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 및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~2016년까지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은 편성된 예산목과 일치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, 5개 사업(‘15년 3개, ‘16년 2개) 사업예산 250백만원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와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했으나,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만으로 편성하여

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결정통보를 하였으며, 실 집행 내역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편성하지 않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집행 하였다.

[표] 국고보조 시범사업 예산편성 및 실 집행 내역(2015년~2016년)

사업 연도	사 업 명	사업비 (천원)	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예산편성		완료보고 실집행 내역	
			민간자본 사업보조 (402-01)	민간경상 사업보조 (307-02)	민간자본 사업보조 (402-01)	민간경상 사업보조 (307-02) 등
2015	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(○○마을)	50,000	50,000		38,210	11,790
2015	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(○○마을)	50,000	50,000		39,720	10,280
2015	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(○○○○마을)	50,000	50,000		38,719	11,281
2016	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(○○마을)	50,000	50,000		37,244	12,756
2016	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(○○○○마을)	50,000	50,000		38,338	11,662
	계	250,000			192,231	57,769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주의] 앞으로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,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